

석유류 가격자유화 추진계획

- 동력자원부 -

1. 추진배경과 필요성

- 石油全量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을 고시 가격으로 관리(석유사업법 제15조)
 - 고시대상유종('91. 7월현재) : 휘발유, 등유, 경유, B-C油等(전체 석유제품의 80%)
- 걸프사태이후 국제석유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며, 산유국과 소비국간 협력강화, 中東정세의 안정화에 따라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경제의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 '91. 8월중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수출입자유화, 유통구조개선, 석유정체업 관리제도 개선등)
 - 향후 석유산업 대외개방에 사전대비하고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촉진 필요
-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석유소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의 수요조절 능력 제고가 필요
 - 걸프사태기간중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휘발유, 등유등 소비성 유종의 소비증가율이 30% 이상을 상회하는 문제점 노정

《국내 석유시장 여건 변화》

	1980	1985	1990
• 석유소비량(百萬배럴)	182.1	189.2	356.3
• 제품수입량(百萬배럴)	13.9	24.6	101.3
(수입비율, %)	(7.6)	(13.0)	(28.4)

2. 가격자유화 기본방향

- 국민 경제적 과급효과를 감안하여 경쟁여건이 조성된 석유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 가격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석유산업 규제완화 병행

1 단계 (현행)
나프타등 7개유종 자유화 실시중 (수요의 20%)

2단계 ('91. 8중)
휘발유, 등유의 자유화 (수요의 15%)

3단계 ('92이후)
경유, B-C등의 전면 자유화 (수요의 65%)

- 경쟁여건이 조성
• 소비성유종 평가 이후
- 수송 및 산업용
• 휘발유, 등유의 가격자유화효과

- 단 관리가격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의 적응 능력, 유통구조 개선등 여건변화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여 보완조치 강구
 - 자유화된 석유제품 가격의 소비자에 대한 계시제도 시행
 - 행정조치 강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가격의 폭락·폭등 방지
- ※ 휘발유 및 등유의 가격자유화 여건
 - 휘발유 : - 국내 공급자(정유사)간 경쟁여건이 조성됨
 - 생산능력 ('91) : 89千B/D
 - 평균수요 ('91) : 78千B/D
 - 고수익 상품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노력이 기대됨
- 등 유 : - 계절적 상품으로 가격기능을 통한 수요안정 도모
 - 수요변동 : 하절기 30%, 동절기 70% 수준
 - 수입비중이 70% 이상으로 동절기간중에 집중

3. 가격자유화(휘발유, 등유) 예상문제점 및 대책방안

(1) 가격자유화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방향

- 공급자간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과도한 가격상승 등
 - 정유업계의 과점, 유통시장의 참입제약에 따른 가격인상
 - 정유업계가 우월적 지위남용을 통해 재판매가격 지정 및 끼워팔기 등
- 공급자간 과당경쟁에 의한 과도한 가격하락
 - 정유업계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원가이하의 과당경쟁
- 유통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가격불안
 - 3.14 조정명령해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등 유통구조 개편에 따라 가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 지역별, 소비자별 가격차이 발생(僻. 奧地 공급가격 상승 등)
- 기타 자유화 유종의 빈번한 가격 변동시 세무행정상 어려움 야기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 조치 강구

- 판매가격 계시 및 소비자불편 신고센터 운영
- 시장판매가격에 대한 정기보고 체계 확립
-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에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시정

(2) 商去來 질서확립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가격표시

를 의무화

- 주요 지침의 고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3條에 의거)
 - 표시대상 : 휘발유와 등유의 판매가격
 - 표시의무자 :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 표시방법 : 일반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고정판(가로 1m 세로 1m)을 1개소이상 설치(이동판매소는 차량에 표시)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 부당 가격판매 및 거래상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

- 설치 장소 : (정부) 동력자원부 - 자원정책실 석유정책과
서울특별시 - 산업경제국 연료과
각 시·도 - 지역경제국 상정과
-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현장 점검 반 편성 :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第20條 규정에 의거 점검반 편성, 운영

- 구성 : (반장) 동력자원부 관계관
(반원) 해당지역 시·도 관계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각 1인

안내문 게시 : 가격자유화의 내용을 일반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각 주유소 및 판매업소 입구에 안내문 게시(시행초 1개월)

(3) 시장 판매가격의 정기보고 체계획립

판매가격 보고제도 실시 : (석유사업법 제20조에 의거)

[판매실적가격 보고] : 각 유통단계별로 판매가격을 주간보고

- 보고 내용 : 휘발유 및 등유의 每日別 판매가격

- 보고 주기 : 주간단위로 보고

- 보고대상자 : 정유사별, 지역별, 계열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선정

- 보고체계 : ○ 시·도는 지정된 주유소의 전주실적을 매주 금요일까지 동자부에 보고(팩스밀리 전송)

○ 대리점 및 정유사는 해당협회를 통해 동자부에 보고
[매주 금요일]

- 주유소 -----> 각 시·도
- 대리점 -----> 유통협회]-----> 동자부
- 정유회사 -----> 석유협회

판매기록부 비치 :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는 판매기록부를 비치하고 日別 거래실적을 기록

시장가격 정보물 발간 :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발간물 : 주간석유동향(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정보 다이제스트(대한석유협회)

(4) 자유화 가격의 관리방안

자유화 실시 초기의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국내제조원가 및 수입가격(기금등 부대비 포함)을 감안하여 자유화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내부가격관리기준을 설정, 관리

휘발유 : 月別 내부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

○ 관리기준 : 내부기준가격의 일정폭(+3%) 범위를 상회하는 경우 행정지도

- 단 과당경쟁으로 하락시에는 기준가격의 -3% 범위만을 정상거래를 인정

○ 내부기준가격(세전공장도) : 수입공급이 미미하고 대부분이 생산공급이므로 국내제조원가 변동을 감안, 설정

- 단 수입시에는 수입도착가격(수입가+기금등 부대비용) 기준

[1단계] : 자유화실시 이후 국내원유도입 월평균가격이 17.70\$/B(FOB, 현 유가관리 기준원유가) 수준에 도달하는 일정기간.

○내부 기준가 : 현행 세전공장도 가격 적용

[2단계] : 국내원유도입 월평균가격이 17.70\$/B을 상회하는 시기부터.

○내부 기준가 : 中東지역 원유가격(Dubai 와 Oman 產 평균) 및 환율의 평균변동율을 적용
今月價 = 前月價 × 原油價 변동(전월/前前月) × 환율

등 유 : 계절상품으로 동절기간중 수급안정을 위하여 국제가격을 감안, 책정된 내부기준가격을 토대로 행정지도

○내부기준가격(세전공장도) : Platt's 紙의 C&F JPN가격 + 기금등 수입부대비용

(5) 행정지도 실시

지역별 공급가격 지도

○가격자유화에 따라 수송거리, 판매규모등 여건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국 43개 정유회사 반출장소에서의 공급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행정지도.

부당가격의 시정조치

○행정지도 기준 :

- 공장도 가격 : 내부기준가격의 일정폭(+3%) 범위이상 인상시

- 소비자 가격 : (공장도기준가격+현행 유통마진+세금)의 일정폭(+3%) 범위이상 인상시

○행정지도 절차 :

- 1차 : 해당사업자에 대해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 및 경영상황에 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관계법) 석유사업법 第20條(보고 및 검사)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16條

- 2차 : 부당가격 형성 시 가격시정권고.

- 미시정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가격인하, 행위의 금지 공표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4조〉

- 3차 : 관계법에 의한 벌칙부과 및 처벌

○가격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석유사업법 第28條)

○부당가격인상 등 위반행위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독점규제법 第66條)

(6) 긴급 조치 : 국제석유시장의 급변등으로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 또는 국내수급의 심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정부 직접관리

4. 소관기관별 조치사항

조 치 내 용	관 련 기 관	비 고
(1) 가격표시판 게시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 표시의무업소 : 주유소, 일반판매소 ○ 표시대상 : 회발유(고급, 보통, 무연), 등유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자유화 시행 1개월간
(2) 자유화 시행 안내문 게시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 게시업소 : 주유소, 일반판매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3) 판매 기록부 비치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 비치의무업소 :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 양식 : 동자부 고시 第91-46號(別添1)		

(4) 판매가격 주간보고	시·도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 보고업소 : 주유소(258개)→시·도 대리점(25개)→유통협회 정유사(5개)→석유협회		
○ 양식 : 동자부 고시 제91-46호(별첨3) ※ 시·도, 유통협회, 석유협회는 매주 금요일 까지 동자부에 보고		
(5)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운영	시·도,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개발공사 석유협회	
○ 자유화 시행 안내문에 해당 신고센터 표기		
(6) 시장가격 정보물 발간		
○ 주간 석유동향, 석유정보다이제스트에 포함		石油政策課 협조

석유의 발자취

석유사회

우리 선조들은 원유와 석유, 휘발유를 구별할 줄 몰라서 불켜는 서양기름을 석유라고 불렀다.

휘발유는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이땅에 나타났고, 이보다 먼저 상륙한 것이 등유인 석유다. 이 석유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타난 해는 1880년 이때 우리는 서양문물에 눈을 뜨던 개화 초기여서, 조정에서는 사신들을 일본이나 미국에 보내어 새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이해 9월 경남 양산에 있던 통도사의 승려 이동인이 어떻게 줄이 닿아, 조정의 개화파 인사들과 일본에 건너갔던 일이 있었다. 그는 일본의 큰 도시를 다니며 신식문명을 견학하다가 석유와 석유램프 그리고 성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국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온 것이 이땅에 처음으로 석유가 상륙하게 된 동기이다.

그후 한·미수교가 체결되기 2년 전인 1882년부터 미국 상인들이 보따리 장사식으로 조금씩 석유를 들여오면서 송진이나 아주까리 또는 목화씨기름 등 잔이 석유 등잔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석유도 쉽게 구할 수 없어 중국이나 일본 상인들을 통해 겨우 구해 쓰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한·미수교가 맺어지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상인 또는 선교사들이 석유를 대량 들여오기 시작했다. 교역

물 중에서도 석유가 중요거래품목으로 끼일 만큼 국내소비가 날로 증가해 갔다.

1897년 국내 주재 미국공사 앤런이 우리 조정으로부터 무더기 이권을 따냈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 최대석유회사이던 스텐더드오일이 인천 월미도에 석유저장소 건립허가를 받아, 이해 12월 31일 한국 최초의 저유텅크가 세워졌다.

인천연안에 접안시설까지 갖추고 거대한 유조선을 파견했던 스텐더드 오일의 석유가 당시로서는 국내 유일의 석유였고 이것을 「솔표」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 했었다.

스텐더드오일은 국내총판을 당시 인천과 경성을 무대로 무역장사를 하던 타운센트라는 미국 상인에게 주어 국내 유일의 석유 보급상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었다. 나중에는 그의 인천가게를 「순신창」이라는 한국 상호로 바꾸어 큰 재미를 보기도 했다.

새벽 동이 틀때면 「순신창」가게 앞에는 석유양철통을 주렁주렁 매단 당나귀행렬과 석유통을 짊어진 보부상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서로 먼저 사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어떤 때는 순검까지 동원되어 정리했다는 것이다. 스텐더드오일은 1920년 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하였고 자동차가 등장하자 휘발유도 함께 공급하였다.